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허권 등 사업화 과세특례 신설〉

■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962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특허권 등 사업화 과세특례 신설(신정훈의원안)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신정훈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11. 6.

다. 회 부 일 : 2025. 1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 등을 취득하거나 이전·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특허권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를 감면해주는 이른바 특허박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의 운영 필요성이 제기됨. 다만, 기술사업화에 대한 적용주체를 중소기업·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으로 하고, 적용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신성장 분야로 한정함으로써 원활한 제도 정착과 효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함.

이에 중소·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 또는 결과에서 창출·파생되거나 신성장 분야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을 세액 감면함으로써 특허권 등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특허권 등 사업화 과세특례 신설(신정훈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 ○ 기술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대상: 중소·중견기업 - 감면율: 특허권 등 이전소득의 50% - 적용기한: 2026. 12. 31. ○ 기술 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 대상: 중소·중견기업 - 감면율: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25% - 적용기한: 2026. 12. 31. ○ <신 설>	□ 기술이전·취득 및 사업화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기술 사업화에 대한 세액감면 -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국내복귀기업 - 감면율: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 또는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권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또는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15%(중소기업은 30%)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전 또는 대여받은 특허권등은 제외 ** ①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재화나 용역, ②신성장 분야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신정훈의원안 2025. 11. 6. 발의(의안번호 13962)

□ 개정안은 중소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 또는 결과에서 창출·파생된 재화나 용역 또는 신성장 분야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음.

①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제12조제1항)은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특허권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0%의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②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제12조제3항)은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25%를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체 연구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임.

기술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은 1998년 세법개정으로 2003년 말을 적용기한으로 하여 신설되었으며, 당시에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적용대상이었음. 그 후, 2005년 말까지 한 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된 후 감면혜택의 90% 이상이 소수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다는 이유 등¹⁾으로 폐지되었음.

2014년부터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도입되어 2015년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 후, 현재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있음. 기술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은 2015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도입되었으며, 2021년 세법개정으로 세액감면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였음.

2024년 조세지출은 전년대비 2억원 감소한 4억원이고, 2025년 및 2026년 조세지출은 2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음.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소득세	0.3	0.1	0.1	0.9	0.7	0.7	0.01	0.01
법인세	6	6	2	5	5	3	2	2
합 계	6	6	2	6	6	4	2	2

주: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기술 사업화 세액감면을 신설함으로써, 기술 사업화 투자에 대한 세후수익률을 높여 기업의 R&D와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현행 세제지원 제도는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10조) 등을 통해 R&D 투자 단계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나, R&D 성과물 활

1)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검토보고, 2005. 11.

용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현재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 (patent box) 제도’²⁾를 운영하여 R&D와 기술사업화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주요국의 특허박스 도입 현황]

국가	도입시기	대상소득	일반 법인세율	특허박스 세율
아일랜드	1973년	제품매출, 대여	12.5%	6.25%
프랑스	2000년	양도, 대여	33%	15%
네덜란드	2007년	제품매출, 양도, 대여	25%	5%
벨기에	2008년	제품매출, 양도, 대여	34%	6.8%
영국	2013년	제품매출, 양도, 대여	19%	10%

자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 2020. 3.

둘째, 다국적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특허권 출연을 하는 등 국내 투자를 확대할 유인을 제공하여 산업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EU에서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제도 미도입국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특허박스 제도 도입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10.8%로 EU 평균인 3.8%를 상회했지만, 미도입

2) 특허박스 제도는 기업의 전체 순이익 가운데 지식재산권(IP)에 의해 창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기업의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하여 도입됨.

국은 증가율이 △8.0%였음.³⁾

셋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⁴⁾(이하 “유턴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음.

산업통상부는 매년 유턴기업을 선정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턴기업 신규 선정건수는 2018년 5건에서 2021년 25건으로 증가한 이후 감소하여 2024년 20건으로 줄었음.

[유턴기업 신규 선정 건수]

(단위: 건)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5	10	17	25	23	22	20

자료: 산업통상부

3) 한국경제연구원, ‘주요국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 효과와 시사점’, 2017. 2.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진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일 것

나.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정보통신업,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번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하고 있을 것

2. “사업장”이란 제1호나목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국내복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한 경우

나.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나.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개정안과 같이 유턴기업에 대해 특허 등 사업화 세액감면을 적용하면 유턴기업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세부담을 완화하여 유턴기업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제품판매 소득 중 특허권 기여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워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특허권을 이용한 재화나 용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특허권의 기여 정도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둘째, 특허는 기업에 독점적인 권리를 정책적으로 보장하여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해당 수익에 대해 세액감면까지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임.⁵⁾ 이에 따라 특허를 등록한 기업은 20년간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유하며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즉, 특허를 등록한 기업은 이미 수익창출을 위한 제도적인 보호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허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될 수 있음.⁶⁾

5) 「특허법」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문 의 처

02)6788-5155

-
- 6)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R&D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예: R&D 세액공제)에 더하여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이중지원으로 과도한 세제지원이라는 입장임. 또한, 제품 판매 소득 중 특정 특허권이 기여한 부분을 구분하기 어려워 조세회피 수단 악용 가능성이 있고, 과세당국과 분쟁으로 기업의 세무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